

여객운송 규정 시행내규

(제정 2003. 8. 2 내규 제 28호)
(개정 2004. 4. 29 내규 제 42호)
(개정 2005. 9. 26 내규 제 64호)
(개정 2006. 8. 7 내규 제103호)
(개정 2007. 8. 31 내규 제139호)
(개정 2011. 6. 24 내규 제225호)
(개정 2014. 3. 25 내규 제324호)
(개정 2015. 4. 27 예규 제26호(조직개편사항 반영 등 일괄정비지침))
(개정 2015. 8. 19 예규 제27호(조직개편사항 반영 등 일괄정비지침))
(개정 2017. 6. 16 예규 제28호(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사규 일괄정비지침))
(개정 2017. 7. 18 내규 제445호)
(개정 2017. 9. 27 예규 제29호(조직개편사항 반영 등 일괄정비지침))
(개정 2017. 12. 27 내규 제463호)
(개정 2019. 7. 3 내규 제514호)
(개정 2019. 7. 19 예규 제32호(조직개편사항 반영 등 일괄정비지침))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내규는 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사(이하“공사”라 한다) 여객운송 규정(이하“규정”이라 한다) 제64조에 의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여객운송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는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내규에 의한다.

제3조(관계 규정의 해석 또는 적용) ① 여객운송에 있어 관계 규정의 해석 또는 적용상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선 여객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하고 적용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관계 역장은 영업팀장을 통하여 그 자세한 내용을 영업담당

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 8. 7, 2007. 8. 31, 2010. 11. 1, 2015. 4. 27, 2015. 8. 19, 2017. 9. 27>

- ③ 영업담당부서의 장은 제2항의 경우 그 처리방법을 정하여 시달하여야 한다. <개정 2006. 8. 7>

제4조(거스름돈의 준비) 역장은 발권기, 자동발매기, 등의 전자설비별로 승차권의 판매 및 정산에 필요한 거스름돈을 항상 준비하여야 한다. <개정 2005. 9. 26, 2006. 8. 7>

제5조(수표의 취급방법) <개정 2006. 8. 7> ① 규정 제5조제1항에 의하여 자기앞수표를 수수할 때에는 수표의 뒷면에 연월일 및 여객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를 기입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삭제 <개정 2006. 8. 7>

제6조(여객운송의 조정) ① 영업팀장은 행사 등의 사유로 여객이 폭주하여 심한 혼란이 예상되어 여객운송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미리 그 조정방안을 강구하여 영업담당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6. 8. 7, 2010. 11. 1, 2015. 4. 27, 2015. 8. 19, 2017. 9. 27>

- ② 제1항에 의하여 조정된 사항은 그 요지를 대합실 등 여객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고 방송 또는 적절한 방법으로 여객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열차만원 등의 통보) ① 기관사는 열차가 만원을 이루거나 고장 등을 일으켜 여객이 승차하기 어려울 때에는 그 사실을 무선전화 등으로 **종합관제담당부서의 장**에게 속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6. 8. 7, 2017. 9. 27, 2019. 7. 19>

- ② 제1항의 속보를 받은 **종합관제담당부서의 장**은 관계 역에 그 요지를 통보하여야 하며 역장은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6. 8. 7, 2017. 9. 27, 2019. 7. 19>

제8조(기간의 계산방법) 규정 제8조에 의한 기간의 계산은 1일의 경우 00시부터 24시까지를 말하며 24시를 초과한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하여 계산한다.

제9조(여객운임) <신설 2007. 8. 31, 삭제 2011.6.24>

제9조의2(운임의 면제) ① 규정 제9조에 의한 운임면제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06. 8. 7>

1. 65세 이상의 노인
2. 상이등급 1급에서 7급에 해당하는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및 상이등급 1급에 해당하는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를 직접 보호하기 위하여 동승하는 보호자 1인
3. 독립유공자(애국지사)와 다른 사람의 보호 없이 활동이 어려운 독립유공자를 직접 보호하기 위하여 동승하는 보호자 1인
4.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그 장애인을 직접 보호하기 위하여 동승하는 보호자 1인<개정 2019. 7. 3>
5.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및 장애등급 1급 판정을 받은 5·18민주화운동부상자를 직접 보호하기 위하여 동승하는 보호자 1인 <개정 2006. 8. 7, 2007. 8. 31>

② 규정 제9조제5호에 의한 운임면제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06. 8. 7>

1. 3.1절(3월 1일),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기념일(4월 13일), 현충일(6월 6일), 광복절(8월 15일)에 광복회원과 국가유공자 및 그 동반가족 1인
2. 국군의 날(10월 1일)에 제복을 착용한 현역군인
3. 지하철 공안유지 업무수행 전담경찰관
4. 공사 임직원
5. 기타 사장이 여객유치 또는 공사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6. 가족과 함께 여행하는 유아. 다만, 동반하는 여객이 가족이 아닐 경우에는 보호자 1인에 유아 2인을 무임으로 한다.<신설 2007. 8. 31, 개정 2017. 12. 27>

③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대상자에게는 기념일 전일부터 기념일 익일까지 3일간을, 제2호에 해당하는 대상자에게는 기념일에 한하여, 제5호에 해당하는 대상자에게는 사장이 정하는 기간에 한하여 우대권을 발급한다.

- ④ 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대상자에게는 업무용승차권을 발급한다.
<개정 2006. 8. 7>

제2장 삭제 < 2004. 4. 29>

제10조 내지 제16조 삭제 <2004. 4. 29>

제 3 장 승차권의 판매

제 1 절 총 칙

제17조(승차권의 준비) 승차권의 준비와 공급에 관한 사항은 이를 따로 정한다.

제18조(승차권의 분실 또는 훼손시의 처리) ① 역장 또는 영업팀장은 승차권을 분실 또는 훼손하였거나 도난당하였을 때에는 그 종류, 수량 등을 영업담당부서의 장에게 속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6. 8. 7, 2010. 11. 1, 2015. 4. 27, 2015. 8. 19, 2017. 9. 27>

② 제1항의 속보를 한 후 승차권을 발견하였을 때에도 그 요지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승차권 등의 발행) 승차권 등은 전자설비별로 다음 각호와 같이 발행한다. <개정 2005. 9. 26>

1. 자동발매기 : 일반보통권, 할인보통권, 우대권 <개정 2004. 4. 29, 2017. 12. 27>
2. 발권기 : 일반보통권, 우대권, 할인보통권 <개정 2004. 4. 29, 2005. 9. 26>
3. 삭제 <개정 2006. 8. 7>

제20조(창구의 지정) 역장은 승차권 판매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승차권의 종류별로 그 창구를 따로 지정하여 판매할 수 있다.

제21조 삭제 <개정 2006. 8. 7>

제22조 삭제 <2005. 9. 26>

제23조 삭제 <개정 2006. 8. 7>

제24조(승차권의 판매 및 발급 결과보고) 역장은 승차권의 판매 및 발급현황을 관계 일보 등 따로 정한 보고서에 의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제 2 절 승차권의 판매 및 발급

제25조(단체권의 취급) 단체권은 발권기를 이용하여 발권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발권기 취급이 불가능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단체권을 작성 교부한다.

[전문개정 2006. 8. 7]

제26조(도중역에서 타거나 내리는 단체여객의 운송) ① 단체여객의 일부가 도중역에서 타거나 내리는 경우에는 여행하는 전구간에 대한 단체여객운임을 지불한 때에 한하여 이를 하나의 단체로 본다.

② 제1항에 의하여 도중역에서 타거나 내리는 역의 수는 왕복 여정별로 각각 2개역을 초과할 수 없으며 타거나 내리는 역명과 인원을 단체권의 비고란에 기입하고 이를 관계 역장에게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7조(단체권의 발행방법) 삭제 <개정 2006. 8. 7>

제 4 장 승차권의 효력

제28조(승차권의 검사) ① 승차권의 검사는 여객이 여행을 개시하거나 종료할 때에 자동개집표기에 의하여 검사한다. 다만, 제40조에 의한 경우에는 역무원이 검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5. 9. 26>

② 삭제 <2007. 8. 31>

제29조(승차권의 검사사항) ①승차권을 검사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자동개집표기는 규정 제39조 및 제40조에 정한 사항 중 필요한 내용을 검사한다.
2. 단체여객에 대하여는 그 승차권의 진위, 통용구간, 통용기간 및 그 인원수 등을 검사한다.

②승차권을 무효로 하여 회수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관계 일보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회수한 청소년·학생교통카드 등의 처리)<개정 2005. 9. 26, 2007. 8. 31> ① 규정 제36조에 의하여 무효로 회수한 교통카드는 해당 승차구간에 대한 운임을 공제한 것으로 이를 무효로 회수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4. 4. 29, 2005. 9. 26, 2007. 8. 31, 2017. 12. 27>

② 신분증을 휴대하지 않아 운임 및 부가금을 납부한 여객이 그 신분증을 3일 이내에 제시한 때에는 이미 추징한 운임 및 부가금을 반환한다. <개정 2006. 8. 7, 2007. 8. 31, 2017. 12. 27>

제31조 삭제 <개정 2006. 8. 7>

제32조(습득한 교통카드 등의 처리)<개정 2005. 9. 26, 2007. 8. 31> ① 교통카드를 습득하였을 때에는 그 명세를 기록, 유지하고 분실자가 확인되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4. 4. 29, 2005. 9. 26, 2007. 8. 31>

② 교통카드의 부정사용자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처리결과를 영업담당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4. 4. 29, 2005. 9. 26, 2006. 8. 7, 2007. 8. 31, 2017. 12. 27>

제33조 삭제 <개정 2006. 8. 7>

제34조 삭제 <개정 2006. 8. 7>

제35조(승차권 등의 색채 및 무늬모양) ① 승차권 등의 색채는 다음 각호를 원칙으로 하되, 상호 구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색상을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05. 9. 26, 2006. 8. 7>

1. 일반보통권 및 할인보통권 : 황색바탕에 흑색글씨 <개정 2004. 4. 29>

2. 우대권 : 백색 바탕에 흑색글씨

② 삭제 <개정 2006. 8. 7>

제36조(승차권의 크기 및 재질) 승차권 등의 크기 및 재질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 9. 26, 2006. 8. 7>

1. 보통 승차권 등의 크기

가. 지름 : 35mm

나. 두께 : 1.5mm

2. 승차권 등의 재질

가. 일반보통권, 할인보통권, 우대권 : PET <개정 2004. 4. 29>

나. 역출입권, 업무용승차권, 뱃지 : PVC <개정 2004. 4. 29, 2005. 9. 26>

제37조 삭제 <개정 2006. 8. 7>

제38조(승차권 이용안내 카드) 삭제 <2007. 8. 31>

제 5 장 여객운송

제39조(역에 입장한 후 나올 경우의 승차권 취급) 여객이 발역에서 개표를 하고 입장한 후 승차하지 아니하고 자동개집표기 밖으로 나갈 경우에는 규정 제43조에 의한다. 다만, 부득이하다고 인정되고 그 승차권을 맡겨 둘 경우에는 그 통용기간 내에 한하여 이를 유효로 취급할 수 있다.

제40조(자동개집표기 등의 취급 특례) 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개집표기 또는 비상개집표구의 여닫이문을 열어 둔 상태에서 여객이 이를 이용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06. 8. 7>

1. 단체권으로 여행할 경우

2. 열차운행 불능 및 열차지연 등의 사유로 승차권을 반환할 경우

3. 지체부자유자가 휠체어로 비상게이트를 통과할 경우 <개정 2006. 8. 7>

4. 여객이 폭주하여 자동개집표기로 처리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할 경우

5. 자동개집표기의 정전 및 고장 등으로 승차권을 개표 또는 집표할 수 없는 경우

6. 기타 역장이 부득이하다고 판단할 경우

제41조(임시취급내용의 게시) 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시취급의 내용에 관하여는 여객이 보기 쉬운 곳에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6. 8. 7>

1. 임시열차를 운행할 때에는 그 기간, 구간, 발착시간 등
2. 임시 승차권판매소를 설치할 때에는 그 위치, 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 등
3. 사고 등으로 일부열차의 운행을 임시로 변경할 때에는 그 내용, 기간 등
4. 사고 등으로 열차운행 불능 또는 지연의 경우에는 불통시간, 불통구간, 복구예정시각, 지연예상시간 등

제42조(분실증명서의 발행방법) 규정 제49조제2항에 의하여 분실증명서를 발행할 때에는 그 여백에 분실한 승차권의 개표연월일시분, 승차구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여객의 신고에 의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제43조(단체권 분실시의 처리) 삭제 <개정 2006. 8. 7>

제44조 삭제 <개정 2006. 8. 7>

제 6 장 여객운임의 추정 및 반환

제45조(여객운임의 추정) ① 여객운임 또는 부가금을 추정할 때에는 규정 및 내규 등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여객운임요금영수증에 의하여 처리한다. 다만, 발권기에서 취급할 경우에는 여객운임요금영수증 발급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운임의 계산은 각 승차권마다 계산한다. 다만, 단체권에 대하여는 1건마다 계산한다.

③ 규정 제52조제5항에 의하여 운임 및 부가금을 추정할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의 부가운임 납부 안내장을 발행 교부하며 이 경우 발행사항을 영업담당

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7. 8. 31, 개정 2014. 3. 25>

제46조(부가금의 면제) 어린이와 청소년, 일반의 구분을 잘못하여 정당한 승차권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승차하였을 때에는 미리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정당한 운임과 차액의 여객운임을 받는다. <개정 2007. 8. 31, 2017. 12. 27>

제47조(표시사항이 잘못된 승차권의 반환처리) 여객이 소지한 승차권의 표시사항이 잘못되어 규정 제46조에 의하여 처리하였을 때에는 원승차권을 관계일보에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제48조(개표한 승차권의 반환) 승차권을 개표한 후 곧 마지막 열차가 출발하여 승차하지 못한 경우에는 규정 제57조에 의한 여객운임을 반환할 수 있다.<개정 2017. 12. 27>

제48조의2(대체교통비 지급) ① 규정 제57조제5항에 의하여 1시간 이상 열차내 지연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규정 제57조에 정한 승차권 반환외에 별도의 교통비로 5,000원 또는 5,000원에 상당하는 승차권이나 선불교통카드에 금액을 보충하여 지급한다. 다만, 1시간 이상 열차내 지연후 열차지연 사유가 해소되어 여객이 계속 열차를 이용할 경우에는 규정 제57조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한다. <개정 2005. 9. 26, 2007. 8. 31>

② 마지막 열차가 1시간 이상 열차내 지연된 경우에는 규정 제57조에 정한 승차권 반환외에 별도의 교통비로 10,000원 또는 10,000원에 상당하는 승차권이나 선불교통카드에 금액을 보충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5. 9. 26, 2007. 8. 31>

③ 천재지변, 기상상태 등으로 인하여 예견치 못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와 명백한 공사 귀책사유가 아닌 경우의 열차내 지연에 대하여는 규정 제57조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한다.

④ 기타 여객운송의 원활을 위하여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1항과 같이 취급할 수 있다. <신설 2004. 4. 29>

⑤ 규정 제57조제6항에 정한 지연증명서는 별지 제13호서식으로 발급한다. <신설 2007. 8. 31>

⑥ 규정 제57조에 의한 운임의 반환에 대하여는 영업담당부서의 장이 결정한다. <신설 2007. 8. 31>

제48조의3(대체교통비 지급방법) ① 대체교통비는 정당한 승차권을 소지한 여객에 한하여 하차역에서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여 역보관금으로 역장이 우선 지급한다.

② 부득이 당일 현금으로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기재한 후 별지 제11호서식의 확인서를 발행하고, 확인서를 발급 받은 여객은 발행일로부터 3일 이내에 가까운 역에 청구하여 교통비를 지급 받을 수 있다.

③ 역장은 대체교통비를 지급하였을 때에는 증빙서류(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를 첨부하여 영업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영업팀장은 해당역에서 지급현황을 파악하여 일상경비를 청구한 후, 배정받은 금액을 해당역으로 배분 처리한다. <본조신설 2004. 4. 29, 개정 2005. 9. 26, 2010. 11. 1, 2015. 4. 27, 2015. 8. 19, 2017. 9. 27>

제49조(잘못 구입한 승차권의 처리) 규정 제59조에 의하여 여객운임을 추징 또는 반환할 때에는 사용개시 전에 한하여 원승차권을 회수하고 정당한 승차권으로 교환 발급한다.<개정 2017. 12. 27>

제50조(승차권 분실자에 대한 여객운임 반환취급) 승차권을 분실한 여객이 이를 찾아 분실일로부터 1년 이내에 운임 및 부가금의 반환을 청구한 때에는 그 승차권과 규정 제49조에 의한 분실증명서를 회수하고 운임 및 부가금을 반환한다. 이 경우에는 규정 제49조에 의한 수수료를 받는다.

제51조 삭제<2017.12.27> <개정 2006. 8. 7>

제 7 장 휴 대 품

제52조(휴대금지품 및 휴대제한품의 휴대승차 방지) 규정 제60조 및 제61조에 의한 휴대금지품 및 휴대 제한품을 열차 내에 반입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전에 반입을 방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3조(자전거 휴대승차)<조문 신설 2017.7.18.> ① 자전거는 규정 제61조에서 정한 휴대품의 제한에도 불구하고 공사가 지정한 일에는 열차에 휴대하고 승차 할 수 있다.

② 자전거 휴대 여객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송을 거절하거나 여행 도중 역 밖으로 나가게 할 수 있다.

1. 지정차량(차량의 맨 앞 칸 과 맨 뒤 칸)에만 승차 하여야 한다.
2. 역 구내 및 열차 내에서는 자전거를 타고 이동할 수 없다.
3. 자전거 전용 안전설비(자전거 경사로 등) 또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야 한다.
4. 그 밖에 열차운행에 지장을 주거나 다른 여객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자전거 휴대여객은 역 구내 및 열차 내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본인 및 제3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공사는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부 칙 <2003. 8. 2>

이 내규는 2003년 8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4. 29>

이 내규는 2004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9. 26>

이 내규는 2005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8. 7>

이 내규는 2006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8. 31>

이 내규는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6. 24>

이 내규는 2011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3. 25>

이 내규는 2014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7. 18>

이 내규는 2017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12. 27>

이 내규는 2017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12. 27>

이 내규는 2017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7. 3>

이 내규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7. 19>

이 내규는 2019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신설 <2007. 8. 31, 시행 2007. 9. 1>, 삭제<2011.6.24>

[별지 제1호서식] 삭제 <2006. 8. 7>

[별지 제2호서식] 삭제 <2006. 8. 7>

[별지 제3호서식]

단 체 권

단체	1	2	3
구분	보통	학생	후급
승차	1	2	3
구분	편	왕	복

(갑) 역보존용
제 호책
호
역

역부호 :

승 차 일	승 차 지 정			비 고	
	구 분	발 역	착 역		
년 월 일 (:)	역부호				
	역 명				

구 분	승 차 인 원			1 인 당 운 임			운임계
	계	무임인원	운임인원	보 통	할인율	할인운임	
어 른							
학 생							
어린이							
기 타							
계							
대표자	주 소				영수액	원	
	성 명						

년 월 일 발행 취급자 성명 : (인)

- ※ 1. 규격 : 210×149mm(A4 세로 반절지규격)로 한다.
- 2. 편제 : 갑, 을, 병 3편제 복사식(갑, 을, 병의 순으로 편철)으로 하고 갑, 을편은 얇은 종이, 병편은 두꺼운 용지로 한다.
- 3. 번호 : 책번호는 1호부터 1,000호까지 순환하고, 편번호는 1호부터 100호까지를 1권으로 한다.
- 4. 색채 : 갑, 을편은 백색으로 하고, 병편은 연분홍색으로 한다.
- 5. 로고 : 병편의 밑부분에는 흰색의 공사 심벌마크를 표기하고 흑색의 한글 및 영문자로 공사명칭을 표기한다.

[별지 제4호서식] 내지 [별지 제8호서식] 삭제 <2004. 4. 29>

[별지 제9호서식] <신설 2004. 4. 29, 개정 2017. 6. 16>

대체교통비 지급조서

200 년 월 일

○○역장

연번	성명	서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내용

※ A4 세로 규격(210mm×297mm)으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신설 2004. 4. 29, 개정 2017. 6. 16>

대체교통비 확인서 발급대장

200 년 월 일

○○역장

연번	성명	서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비고

※ A4 세로 규격(210mm×297mm)으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신설 2004. 4. 29>

확 인 서

일련번호 :

성 명 : 귀하

지하철이용에 불편을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년 ○월 ○일 00 : 00 ~ 00 : 00까지 열차운행 중단(지연)으로

○○분동안 열차안에서 하차하지 못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이 확인서를 3일 이내에 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사에서 관할하는
가까운 역에 제출하시고 대체교통비를 지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사 ○ ○역장 (인)

※ 가로140mm×세로200mm으로 한다.

부가운임 납부 안내장

대 상 자	성 명		일반전화	
	생년월일		휴 대 폰	
	주 소			
단속내용	일 시		장 소	역
	사 유			
부가운임	납부금액	원		
	산출내역	기본운임(원)+기본운임×30배(원)		
	산출근거	◦ 철도사업법 제10조(부가운임의 징수) ◦ 여객운송 규정 제52조(부가금)		
납부기한	단속일로부터 10일 이내(년 월 일까지) ※ 휴일인 경우 익일까지			
납부방법 〈계좌입금〉	◦ 계좌번호 : <u>광주은행 147-127-</u> ◦ 예 금 주 : 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사 ※ 반드시 받는사람 통장 표시내용에 납부대상자 이름 기재 ※ 계좌입금시 수수료는 본인 부담이며, 납부영수증은 입금확인증으로 대체			
유의사항	위 기한내에 소정의 부가운임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9호(무임승차 및 무전취식)에 의거 관할 경찰서장에게 고발 조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범칙금액 5만원			

【개인정보수집동의】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소
- 수집 및 이용목적 : 본인확인 절차사용, 고지의 전달 및 원활한 납부확인 진행
- 제3자(경찰,법원)제공 : 미납시 고발 조치 및 소송 진행
- 보유기간 : 납부완료일까지

※ 만 14세 미만 아동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동의 ☐ 동의안함

위 기재사항이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납부기한 내 성실히 납부할 것을 아래에 서명합니다.

위 본인 : (서명)

이름
성명
성

단속자 : (☎604-) 활 인 자 : 역 장 (인)



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사

[별지 제13호서식] <신설 2007. 8. 31>

책번호 :

일련번호 :

지연증명서

성명:

귀하

열차 이용에 불편을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귀하께서 승차하신 제 열차가
으로 인하여 분간 지연되었음을 증
명합니다.

200 . . .

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사

역장 (인)

(서식규격 가로 100mm × 세로 140mm)